한일건설

# 연동 한일 베라체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VERACE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1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2020.03.19. 이후부터)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시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hefirst-verac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03월 29일(월) | 03월 30일(화) | 03월 31일(수) | 04월 07일(수) | 04월 09일(금) ~ 04월 12일(월) | 04월 19일(월) ~ 04월 21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10:00 ~ 17:00) | 견본주택 방문(10:00 ~ 17:00)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당사 견본주택<b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 – 16139호(2021.03.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8-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총 11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계 | 일반분양 세대수 |
|---|---|---|---|---|---|---|---|---|---|---|---|---|---|---|---|
| 민영주택 | 2021000155 | 01 | 83.6381A | 83A | 83.6381 | 21.2422 | 104.8803 | 44.4998 | 149.3802 | 17.5330 | 84 | 9 | 17 | 26 | 58 |
| | | 02 | 83.4139B | 83B | 83.4139 | 21.8633 | 105.2772 | 44.3805 | 149.6578 | 17.4860 | 28 | 3 | 6 | 9 | 19 |
| | | 합 계 | | | | | | | | | 112 | 12 | 23 | 35 | 77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른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83A | 83B | 합 계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 | 3 | 1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7 | 6 | 23 |
| 합 계 | 26 | 9 | 3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3.6381A | 83.4139B |
|---|---|---|
| 약식표기 (타입) | 83A | 83B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 라인(호) | 층구분 | 공급세대수 | 공급금액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1차(10%) 2021.07.21 | 2차(10%) 2021.10.21 | 3차(10%) 2022.01.21 | 4차(10%) 2022.06.21 | 5차(10%) 2022.09.21 | 6차(10%) 2022.12.21 | 잔금 30% 입주지정일 |
|---|---|---|---|---|---|---|---|---|---|---|---|---|---|---|
| 83A | 1,2,3 | 2 | 3 | 204,311,763 | 388,688,237 | 593,0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 6,7,8 | 2 | 3 | 204,311,763 | 394,688,237 | 599,0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179,700,000 |
| | 1,2,3 | 3 | 3 | 204,311,763 | 377,288,237 | 581,600,000 | 58,160,000 | 58,160,000 | 58,160,000 | 58,160,000 | 58,160,000 | 58,160,000 | 58,160,000 | 174,480,000 |
| | 6,7,8 | 3 | 3 | 204,311,763 | 383,188,237 | 587,500,000 | 58,750,000 | 58,750,000 | 58,750,000 | 58,750,000 | 58,750,000 | 58,750,000 | 58,750,000 | 176,250,000 |
| | 1,2,3 | 4 | 3 | 204,311,763 | 386,988,237 | 591,300,000 | 59,130,000 | 59,130,000 | 59,130,000 | 59,130,000 | 59,130,000 | 59,130,000 | 59,130,000 | 177,390,000 |
| | 6,7,8 | 4 | 3 | 204,311,763 | 392,988,237 | 597,30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179,190,000 |
| | 1,2,3 | 5 | 3 | 204,311,763 | 393,688,237 | 598,0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 6,7,8 | 5 | 3 | 204,311,763 | 399,788,237 | 604,100,000 | 60,410,000 | 60,410,000 | 60,410,000 | 60,410,000 | 60,410,000 | 60,410,000 | 60,410,000 | 181,230,000 |
| | 1,2,3 | 6 | 3 | 204,311,763 | 400,488,237 | 604,800,000 | 60,480,000 | 60,480,000 | 60,480,000 | 60,480,000 | 60,480,000 | 60,480,000 | 60,480,000 | 181,440,000 |
| | 6,7,8 | 6 | 3 | 204,311,763 | 406,588,237 | 610,900,000 | 61,090,000 | 61,090,000 | 61,090,000 | 61,090,000 | 61,090,000 | 61,090,000 | 61,090,000 | 183,270,000 |
| | 1,2,3 | 7 | 3 | 204,311,763 | 407,188,237 | 611,50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183,450,000 |
| | 6,7,8 | 7 | 3 | 204,311,763 | 413,388,237 | 617,700,000 | 61,770,000 | 61,770,000 | 61,770,000 | 61,770,000 | 61,770,000 | 61,770,000 | 61,770,000 | 185,310,000 |
| | 1,2,3 | 8 | 3 | 204,311,763 | 413,888,237 | 618,200,000 | 61,820,000 | 61,820,000 | 61,820,000 | 61,820,000 | 61,820,000 | 61,820,000 | 61,820,000 | 185,460,000 |
| | 6,7,8 | 8 | 3 | 204,311,763 | 420,188,237 | 624,500,000 | 62,450,000 | 62,450,000 | 62,450,000 | 62,450,000 | 62,450,000 | 62,450,000 | 62,450,000 | 187,350,000 |
| | 1,2,3 | 9 | 3 | 204,311,763 | 420,688,237 | 625,0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 6,7,8 | 9 | 3 | 204,311,763 | 426,988,237 | 631,300,000 | 63,130,000 | 63,130,000 | 63,130,000 | 63,130,000 | 63,130,000 | 63,130,000 | 63,130,000 | 189,390,000 |
| | 1,2,3 | 10 | 3 | 204,311,763 | 431,788,237 | 636,100,000 | 63,610,000 | 63,610,000 | 63,610,000 | 63,610,000 | 63,610,000 | 63,610,000 | 63,610,000 | 190,830,000 |
| | 6,7,8 | 10 | 3 | 204,311,763 | 435,388,237 | 639,700,000 | 63,970,000 | 63,970,000 | 63,970,000 | 63,970,000 | 63,970,000 | 63,970,000 | 63,970,000 | 191,910,000 |
| | 1,2,3 | 11 | 3 | 204,311,763 | 440,888,237 | 645,200,000 | 64,520,000 | 64,520,000 | 64,520,000 | 64,520,000 | 64,520,000 | 64,520,000 | 64,520,000 | 193,560,000 |
| | 6,7,8 | 11 | 3 | 204,311,763 | 447,388,237 | 651,700,000 | 65,170,000 | 65,170,000 | 65,170,000 | 65,170,000 | 65,170,000 | 65,170,000 | 65,170,000 | 195,510,000 |
| | 1,2,3 | 12 | 3 | 204,311,763 | 447,688,237 | 652,0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195,600,000 |
| | 6,7,8 | 12 | 3 | 204,311,763 | 454,288,237 | 658,600,000 | 65,860,000 | 65,860,000 | 65,860,000 | 65,860,000 | 65,860,000 | 65,860,000 | 65,860,000 | 197,580,000 |
| | 1,2,3 | 13 | 3 | 204,311,763 | 454,488,237 | 658,800,000 | 65,880,000 | 65,880,000 | 65,880,000 | 65,880,000 | 65,880,000 | 65,880,000 | 65,880,000 | 197,640,000 |
| | 6,7,8 | 13 | 3 | 204,311,763 | 461,088,237 | 665,400,000 | 66,540,000 | 66,540,000 | 66,540,000 | 66,540,000 | 66,540,000 | 66,540,000 | 66,540,000 | 199,620,000 |
| | 1,2,3 | 14 | 3 | 204,311,763 | 461,188,237 | 665,500,000 | 66,550,000 | 66,550,000 | 66,550,000 | 66,550,000 | 66,550,000 | 66,550,000 | 66,550,000 | 199,650,000 |
| | 6,7,8 | 14 | 3 | 204,311,763 | 467,988,237 | 672,30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201,690,000 |
| | 1,2,3 | 15 | 3 | 204,311,763 | 468,988,237 | 673,300,000 | 67,330,000 | 67,330,000 | 67,330,000 | 67,330,000 | 67,330,000 | 67,330,000 | 67,330,000 | 201,990,000 |
| | 6,7,8 | 15 | 3 | 204,311,763 | 474,788,237 | 679,100,000 | 67,910,000 | 67,910,000 | 67,910,000 | 67,910,000 | 67,910,000 | 67,910,000 | 67,910,000 | 203,730,000 |
| 83B | 4,5 | 2 | 2 | 203,764,072 | 392,235,928 | 596,0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178,800,000 |
| | 4,5 | 3 | 2 | 203,764,072 | 380,735,928 | 584,500,000 | 58,450,000 | 58,450,000 | 58,450,000 | 58,450,000 | 58,450,000 | 58,450,000 | 58,450,000 | 175,350,000 |
| | 4,5 | 4 | 2 | 203,764,072 | 390,535,928 | 594,300,000 | 59,430,000 | 59,430,000 | 59,430,000 | 59,430,000 | 59,430,000 | 59,430,000 | 59,430,000 | 178,290,000 |
| | 4,5 | 5 | 2 | 203,764,072 | 397,335,928 | 601,100,000 | 60,110,000 | 60,110,000 | 60,110,000 | 60,110,000 | 60,110,000 | 60,110,000 | 60,110,000 | 180,330,000 |
| | 4,5 | 6 | 2 | 203,764,072 | 404,035,928 | 607,800,000 | 60,780,000 | 60,780,000 | 60,780,000 | 60,780,000 | 60,780,000 | 60,780,000 | 60,780,000 | 182,340,000 |
| | 4,5 | 7 | 2 | 203,764,072 | 410,835,928 | 614,600,000 | 61,460,000 | 61,460,000 | 61,460,000 | 61,460,000 | 61,460,000 | 61,460,000 | 61,460,000 | 184,380,000 |
| | 4,5 | 8 | 2 | 203,764,072 | 417,635,928 | 621,40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186,420,000 |
| | 4,5 | 9 | 2 | 203,764,072 | 424,335,928 | 628,100,000 | 62,810,000 | 62,810,000 | 62,810,000 | 62,810,000 | 62,810,000 | 62,810,000 | 62,810,000 | 188,430,000 |
| | 4,5 | 10 | 2 | 203,764,072 | 431,735,928 | 635,500,000 | 63,550,000 | 63,550,000 | 63,550,000 | 63,550,000 | 63,550,000 | 63,550,000 | 63,550,000 | 190,650,000 |
| | 4,5 | 11 | 2 | 203,764,072 | 444,735,928 | 648,50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64,850,000 | 194,550,000 |
| | 4,5 | 12 | 2 | 203,764,072 | 451,535,928 | 655,300,000 | 65,530,000 | 65,530,000 | 65,530,000 | 65,530,000 | 65,530,000 | 65,530,000 | 65,530,000 | 196,590,000 |
| | 4,5 | 13 | 2 | 203,764,072 | 458,335,928 | 662,100,000 | 66,210,000 | 66,210,000 | 66,210,000 | 66,210,000 | 66,210,000 | 66,210,000 | 66,210,000 | 198,630,000 |
| | 4,5 | 14 | 2 | 203,764,072 | 465,135,928 | 668,900,000 | 66,890,000 | 66,890,000 | 66,890,000 | 66,890,000 | 66,890,000 | 66,890,000 | 66,890,000 | 200,670,000 |
| | 4,5 | 15 | 2 | 203,764,072 | 472,935,928 | 676,700,000 | 67,670,000 | 67,670,000 | 67,670,000 | 67,670,000 | 67,670,000 | 67,670,000 | 67,670,000 | 203,010,000 |

■ 공통 유의사항
- · 분양가격 항목의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 전(세대 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당 사업지는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된 금액이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이 미납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며, 이에 대해 감면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은 추후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세대별 또는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거나, 일시불로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대금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위축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2020.03.19. 이후부터)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기준 | 점수 | 비고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2020.03.19. 이후부터)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2020.03.19. 이후부터)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521,048원 | 7,947,891원 | 8,374,734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9,025,258원 | 9,537,469원 | 10,049,681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521,049원~ 10,529,467원 | 7,947,892원~ 11,127,047원 | 8,374,735원~ 11,724,628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9,025,259원~ 12,033,677원 | 9,537,470원~ 12,716,626원 | 10,049,682원~ 13,399,574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한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단위 : 만원)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 | 250 | 200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 | 400 | 300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적용)<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2021.03.29.(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사업주체 견본주택 |
| 일반공급 | 1순위 | 2021.03.30.(화) 08:00~17:30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대행은행 창구 |
| | 2순위 | 2021.03.31.(수) 08: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br>[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br>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계 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br>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br>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 일시 : 2021.04.07.(수)<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1.04.19.(월)~2021.04.21.(수) (10:00~16:00)<br>•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2020.03.19. 이후부터)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thefirst-verac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1.04.07 (수) ~ 2021.04.17 (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4.0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VI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1.04.09.(금) ~ 2021.04.12.(월) 제출시간 : 10:00 ~ 16:00 |
|---|---|
| 제출처 | 견본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 |
|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공급유형 도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청약 내역과 대조 및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필수 | 추가(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서류 (일반공급 포함) | O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br>·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당첨자 전원제출)<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 | · 견본주택 비치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br>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주택,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br>·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무주택 서약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 | | O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 확약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혼인 신고일 확인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 |
| | O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O | 재직증명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 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제출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 발급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확인 필요시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br>※ 임신진단서(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O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해당자 |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 관련 확인 필요시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br>※ 임신진단서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 | | O | 위임장 | 청약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O |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필수 | 추가(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 (특별/일반) | | O | 자격검증서류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O | 추가개별통지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O | | 계약금 입금증 | 본인 |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내역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수표/카드) 수납 불가)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생략 |
|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O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해당주택 |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본인발급용) |
| | O | | 위임장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
| | O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br>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②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여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br>② 재직증명서 | ①,②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 ①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br>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br>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br>※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br>②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br>※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0년도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다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축지역 3개월' 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00-034-968631 | 아시아신탁(주)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901호 홍길동 → 09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키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당 아파트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해야 하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현관 중문 • 본 아파트는 현관 중문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 본 아파트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며 분양가 포함입니다.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
| 83A | O | O | O | O |
| 83B | O | O | O | O |

■ 하이브리드 쿡탑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 품목 | 제조사 | 설치위치 | 계약금액 계약금(계약시) 10% | 잔금(입주시) 90% | 합계 |
|---|---|---|---|---|---|---|
| 전 타입 | 하이브리드 쿡탑 | SK 매직 | 주방 | 66,000 | 594,000 | 660,000 |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 품목 | 제조사 | 선택 | 설치 품목 | 계약금액 계약금(계약시) 10% | 잔금(입주시) 90% | 합계 |
|---|---|---|---|---|---|---|---|
| 전 타입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키큰장 | 삼성전자 | 선택1 | 빌트인 냉장고 | 627,000 | 5,643,000 | 6,270,000 |
| | | | 선택2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165,000 | 1,485,000 | 1,650,000 |
| | | | 선택3 | 빌트인 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792,000 | 7,128,000 | 7,920,000 |

■ 거실 및 주방 폴리싱 타일 • 본 아파트는 무상으로 거실 및 주방에 포세린타일 시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 추가선택 품목 납부 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 국민은행 | 519737-01-012151 | 한일건설(주) |

■ 추가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함. 공사 착수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추가선택 품목에는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평형별 추가선택 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단종, 품절, 품귀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급사양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장 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정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됨.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함.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및 에어컨 개별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정상운전 시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입주예정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구
- 빌트인 냉장고 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냉장고장 또는 김치냉장고장 대신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수납될 수 있는 수납장으로 변경되어 설치(일반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장소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되며,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의 경우 전 타입에 따라 변경 설치되는 수납장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니, 상담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옵션 미선택시 전면에 도어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유리 사양, 제품형태,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현관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이 주택형마다 상이하며 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규정
- 해당사항 없음.

##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및 아이소, 모델하우스 내 단지모형, 세대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식재,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여건사항
- 각 주택형별 세대의 배치 및 층수 등에 따라 인접 건물 및 각종 시설로 인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고 각 주택형별 및 층별 분양가 차등은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한 결과이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 각 라인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방향 및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공동시청 안테나, 피뢰침, 항공장애등, 환기, 배수,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층 근린생활시설, 2층 놀이정원/휴게쉼터, 옥상정원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클린하우스, 자전거 보관소, 무인택배함 등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 및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석재 및 석재뿜칠 마감,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단지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정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계획, 사인계획은 색채 입면 지문검과 및 시행위탁자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을 설치하지 않는 타입은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도로, 일조, 진입로 등), 주변 건축물 현황 및 개발계획, 조망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건립 및 분양되며,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공동 사용하고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관리운영업체 선정 및 주차장 관리 여건에 따라 주차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 및 일부 타입(라인)은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스폿)조명은 전시용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지하층 주차장은 주거부분(아파트)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차로폭은 6m(연석포함)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함(추후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차로폭 6m로 인하여 차단기 설치유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클린하우스, D.A가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 근린생활시설 입점으로 인해 소음, 냄새, 시간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음.
- 3/4호, 5/6호 라인 지하층~지상층 계단실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및 사용자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변경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음.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적현황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단지배치, 주동위치,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태 및 위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 면적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면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 및 시행 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시 일괄로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각 호실별 출입구의 위치는 각 호실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현장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층 7개소, 지하2층 5개소, 지하3층 5개소로 총 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녹색건축 인증관련 승용차 공동이용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및 표지판 설치되어 있음(녹색건축 인증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건물 내외부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자는 추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단열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인조대리석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 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의 실외기공간에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법상에 따른 공간으로 물건적재나 보관할 수 없고 소방법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대피, 현관문은 일괄잠금 등 장치)도 설치불가를 설치할 수 없으며 거실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로인해 발생 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15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 및 설치업체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주방에 설치되는 엔지니어드 스톤은 이음매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상판 이음매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욕실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입면에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모델하우스 전시세대, 세대모형,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음,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각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 할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과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보일러 등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부위의 비 노출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덧방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본 단지 공사여건, 지하주차장의 현장여건(지질상태, 지하구조, 배수처리 등), 주변 민원 등에 따라 기초구조 및 공사공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면)창호의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색채계획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계단, 장애인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시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2층 하부 전이보는 향후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필로티는 입주 후 입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또는 온천공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1층 상부에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클린하우스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Dry area의 위치 및 개소, 형태, 높이 등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의 천정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해 법정 허용 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에는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바닥에 사용되는 타일, 마루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와 관계 없음.
- 외벽창호(유리포함), 실외기 그릴창은 등은 안전, 결로,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성능개선을 위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외벽면창호 배관 설치 위치 등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층수, 위치별로 창호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 가전제품, 가전시스템, 창호류, 가구류(악세서리, 하드웨어 포함), 위생도기, 수전 등의 경우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개폐시 걸림 수 있음)
- 욕실, 세탁실 및 발코니 등에 결로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세대분전반 내부의 위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대분전반 내부는 분전반 재로 인해 위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천연석 무늬목 등이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이색 균열등이 있을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시설변경, 단열계획으로 인한 일부 가구 등의 수치변경에 대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기로 함.
- 무상제공 및 추가선택 가전제품 등의 A/S는 "을"이 제조사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갑"과 "병"에게 요청 및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록,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제품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자재독점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 양질의 대체제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 인증자재로의 대체 및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동등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수 있음. • 기타 공유부분의 창호크기, 형태 및 일부 마감재, 공용부분의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2층에 놀이정원, 휴게쉼터, 조경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2층의 놀이정원 유아용 놀이공간 및 휴게쉼터, 시설물의 이용자 및 보행자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2층 놀이정원, 휴게쉼터, 조경시설물 및 옥상정원 등은 아파트 전체의 조화와 현장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위치, 형태, 크기,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설비전기 관련 실(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등)등의 면적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별 전용면적으로 배분하여 면적 산입함.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층 7개소, 지하2층 5개소, 지하3층 5개소로 총 17개소 설치되어 있음.
- 지상층 옥외주차 13대는 아파트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주차장 일부(13대)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서 입주자 차량은 주차할 수 없음. • 자전거보관소는 이단주차 형태로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공사시 설치위치 디자인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공사시 디자인, 규격 개수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북측 (6m 도로에 면한 부위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층 근린생활시설 복도 천장고는 각종 설비 배관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단지 배치 특성상 층수 및 장운행에 따라 이사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2층 세대의 전면 테라스에 접하는 거실은 높이 2,200mm의 창호(기준층 : 2,000mm)가 설치되며 난간대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차차단기가 진입, 진출 2개로 분리되지 않고 공간 협소로 인해 1개로 진출입을 관리함.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유의 바람. • 각종 창호류 (방화문 포함) 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정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위치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창호)과 세대간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해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발코니의 타일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세탁기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경량벽체가 적용으로 장식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정물이 필요하며 타공시 파손이 될 수 있음.
- 경비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지하층 3/4호 라인과 5/6호 라인 중간에 계획되어 있음. • 가스배관으로 인하여 주방가구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허가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회사명 | 주소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비 고 |
|---|---|---|---|---|
| 시행위탁자 | 케이엔도시개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36-2 | 220111-0194670 | |
| 시행수탁자 | 아시아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10111-3543801 | |
| 시공사 | 한일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8 (도곡동, 매산빌딩) | 110111-0016190 | |
| 시공사 | (주)신성건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 (금암동, 르네블루빌딩) | 210111-0002289 | |
| 감리자 | 건축사무소 시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 오라로 136(오라일동) | ( 616-26-67897 ) | 계약금액 금삼억팔백만원 (₩308,000,000.-) |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 ■ 당사 홈페이지 : www.thefirst-verace.co.kr
■ 분양문의 : 064) 711 - 688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